

창업연구소 규정

(제정 2011.10.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지원단 부설 창업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창업을 위한 호남권 벤처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경영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 창업경영 컨설팅 및 정책 제언
3. 비즈니스모델,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4. 부실사업 클리닉
5. 국내·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6. 학문분야 연계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지원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기구

제5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 1명
2. 간 사 : 2명 이내
3. 연구원 : 약간명
4. 운영위원 : 7명 이내
5. 평가위원 : 5명 이내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센터) ①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1. 기술창업 연구센터
2.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3. 소자본창업 연구센터

② 제1항의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연구원)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원을 지칭한다.
2.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본교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규정 입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소속 연구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